

청천경찰징계위원회 구성

◦ 서울특별시 훈령 제 54호

◦ 구성

위원장	내부국장
부위원장	총무과장
위원	인사과장
"	비상계획보좌관
"	도시가스과장
"	도로관리과장
"	업무과장

001

(간인생략)

서울특별시

문부181.7- 636

(75.7821)

80. 7. 18

수신 수신처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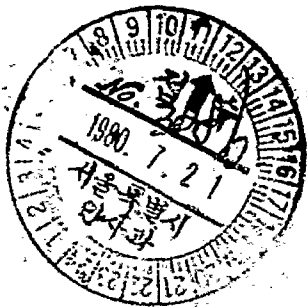
제목 문명발령

계	계장	과장	공람
	 		공람

1. 서울특별시 상원경찰 청계구경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 발령
하였으니 시행에 착오 없도록 알린다.

첨부 : 서울특별시 문부 7529호 1부.

(시보 798호 (80.7.14짜.))



서울특별시

수신처 : 서실1-3, 서관1-4, 서국1-17, 서과1-88, 서구1-47, 직할1-7, 서사1-70,
서소1-3.

 정부공문서규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무국장 박종우 대결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기강확립을 위하여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의 설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구성) (1)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5인이상 7인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내무국장,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인사과장, 백상 기획보좌관, 도시가스과장, 도로관리과장, 업무과장이 된다.

(3)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사무계장이 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의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리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2)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으로 위원장이 된다.

제5조(징계외결의 요구) (1) 징계요구권자는 청원경찰의 소속기관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이 된다.

(2) 소속기관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외결 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외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정계의결요구서의 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정계요구 양정 및 심의 상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정계의결기한) 정계의결은 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계요구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정계심의 대상자의 출석) (1) 정계위원회에서는 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정계심의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정계심의 대상자가 정계위원회에서 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술토기서를 제출하여야 의결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행위 의하여 정계 의결할 수 있다.

(3) 정계심의 대상자가 2회 이상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출석통지서 부본첨부) 서면심사에 의하여 정계의결할 수 있다.

제8조 (심문과 전술권) (1) 정계위원회는 출석한 정계심의 대상자에게 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정계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2) 정계위원회는 정계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히 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정계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부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3) 정계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정계사유심의) 정계위원회에서 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전부, 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 및 명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재건의정

유무동의 정상참작과 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계양정
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제10조 (정계위원회 의결) (1) 정계위원회의 관사는 정계심의에 앞서 각위원에
게 정계사유 및 동기, 정계요구권자의 의견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2) 정계위원회의 의견은 위원장을 포함한 제1차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견이 불립하여 출석위원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정계심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
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다만, 찬반이 같을 때에는
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3) 정계심의 결과에 따른 각위원의 정계양정 결정방법은 심문과 진술이 끝
나고 정계심대상자를 퇴장시킨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정계의결 투표지에 각기
의견을 해당란에 표시하여야 하며, 기프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제3항의 절차에 의거 정계의결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정계의결
대장에 등재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제3항의
정계투표지(위원장과 관사가 본인)를 첨부한 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관사가
작성 하였음을 기재) 1부를 정계요구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1조 (집행) (1) 정계위원회로 부터 정계의결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장
이 10일이내에 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정계처분을 행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정계의결담당자에게 표부하프로서 이를
행한다.

- 제12조 (제삼청구) (1) 정계처분을 받은 자각 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
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 및 자기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모든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을 통한 제삼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속기관장은 제삼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정계위원회에 외부 제삼의
게 하여야 한다. 이때 제삼의 위원은 따로 임명한다.

(3) 제삼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일심제와 같다.

제13조(서류동의 비치) 정계요구권자는 정원경찰의 정계에 관한 모든 서류를
보관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정계 및 소청
규정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 부칙 시행한다.

청원 경찰의 위상차	성명	관명	소속 경찰관
	본직	관급	계급
	주소		
청원 사유	별첨과 같음.		
공통			
정계 요구 권자의 의견			
위와 같이 정계 의견을 요구함. 청원인 소해기관장 (인)			

별지3호 서식

장기외환후표지

과목	감 통						연 회	기 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별지4호 서식

장기외환대장

장기외환 대상자			장기 사유 (비위내용)	장기외환요구		장기외환	
연속	계급	성명		일자	요구 양정	일자	회 양정

징계대상자 인적 사항	소속 및 배치장소	직 명	성 명
의결주문	에 처한다.		
적용법조문	창원경찰청시행령 제17조 1항 1		
징계사유	별지와 같음.		

의와 같이 징계 의결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창원경찰청격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

"

"

"

19 19 19 19 19 19 19 19

